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5. 10. 16.(금), 14:00~18: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현혜, 성성열, 최성락, 박보현,
강현숙, 김권구, 서동철, 한필원,
(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평창 국립축산과학원 기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재심의	공개
2	삼척 석탄화력 1·2호기 건설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3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계획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4	나주 진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5	해남 영춘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6	춘천 중도 도시계획도로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7	남한산성 남장대 발굴	공개
8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 발굴(시굴)	공개
9	부여 화지산 유적 발굴	공개
10	보령 충청수영성 성벽(동벽) 발굴	공개
11	부안 우금산성 발굴	공개
12	부안 유천리요지 발굴(시굴)	공개
13	거창 거열성 발굴(시굴)	공개
14	거창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15	경주 월성 발굴	공개
16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7	평택 용죽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8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부지 내 수양개 VI지구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9	대구 국가산단(1-2공구) 과학대로 확장에 따른 보존유적 재이전 심의	공개
20	아산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표본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	공개

【보고사항】

1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시스템 구축 관련 보고	공개
---	----------------------------	----

I. 심의사항

안건번호 매장2015-11-01

1. 평창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재심의

가. 제안사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추진하는 「평창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하여 2015년 제10차 매장문화재분과 회의(2015. 9. 18.)에서 “지표조사 재실시 후 재검토”로 부결된 사항으로 지표조사를 재실시하고 문화재 보존대책 등에 대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평창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단지 이전사업부지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1-152번지 일원
- 시행자 :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면적 : 1,515,114m²
- 사업내용
 - 현재 천안에 위치한 「성환 가금연구단지」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고, 가금 사육농가가 밀집해 있어 AI(조류인플루엔자) 및 각종 질병에 노출 위험 증가
 -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으로 가금연구단지를 이전, 각종 조류 질병에 대비하고 가금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성과 도출

구분	합계	기존건축물	계사	오리사	초지 및 산림
면적(m ²)	1,515,114	10,924.10	3,635.93	2,952.19	1,497,601.78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한반도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조사면적 : 1,515,114m²
- 조사기간 : 2015. 8. 18.~2015. 10. 12.
- 조사결과
 - 1구역 동남쪽 구릉지대에서 조선시대 백자 및 도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평창 황계리 채궁골 유물산포지①, ②, ③이 확인됨
 - 1구역의 평창 황계리 채궁골 유물산포지① 일대는 해발 83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의 입지에는 부적절하지만 조선시대 유물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유적의 존재유무와 명확한 분포범위, 그리고 유적의 시대 및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굴조사(28,600m²)**가 필요
 - 평창 황계리 채궁골 유물산포지②와 ③일대는 고산지대로 유적의 입지가 부적절하지만 범위내에서 유물이 소량 수습므로 **표본조사(24,420m²)** 필요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 기존 조사결과 >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m ²)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평창 황계리 채궁골 유물산포지①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산1-152번지 일원	약 118,500m ²	조선시대	입회조사	초지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118,500m ² (입회조사 118,500m ²)				

< 재조사 후 조사결과 >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m ²)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평창 황계리 채궁골 유물산포지①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산1-152번지 일원	약 28,600m ²	조선시대	시굴조사	초지
2	평창 황계리 채궁골 유물산포지②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산1-152번지 일원	약 13,360m ²	조선시대	표본조사	초지
3	평창 황계리 채궁골 유물산포지③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산1-152번지 일원	약 11,060m ²	조선시대	표본조사	초지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53,020m ² (시굴조사 28,600m ² 표본조사 24,420m ²)				

라. 추진 경과

- 1차 학술자문회의(2015. 9. 4. / ○○○, ○○○)
 - 조사결과 조사구역 대부분이 해발 800~900m에 이르는 고산지대로 사람이 주거하기에는 부적절한 지형임

- 조사구역을 3개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구역 동남쪽 곡간부 일대에서 백자 저부편 및 도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나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정주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
- 위의 유물 수습상태와 지형 등을 고려한 결과, 평창 횡계리 재궁골 유물산포지①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회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15년 제10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5. 9. 18.)
 - 심의결과 : “지표조사 재실시 후 재검토” 부결
- 2차 학술자문회의(2015. 10. 8. / ○○○, ○○○)
 - 조사결과 평창 횡계리 재궁골 유물산포지①,②,③에서 백자편 및 도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나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정주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
 - 유물이 다수 확인되고 평탄한 사면을 이루는 평창 횡계리 재궁골 유물산포지①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 완사면이지만 한정된 범위에서 소량의 유물이 수습된 평창 횡계리 재궁골 유물산포지②와 ③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마. 검토의견

- 2차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2. 삼척 석탄화력 1·2호기 건설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포스파워(주)에서 추진하는 「삼척 석탄화력 1·2호기 건설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삼척 석탄화력 1·2호기 건설사업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조비동, 근덕면 금계리·상맹방리 및 전면해상 일원
- 시행자 : 포스파워(주)
- 사업면적 : 1,405,030㎡(육상 973,702㎡, 수중 431,328㎡)
- 사업내용 : 발전소 건설

구분	합계	발전시설	부대시설	녹지	항만시설	기타
면적(㎡)	1,405,030	776,001	56,812	137,452	108,455	326,310

* 기타는 대부분 수중지역으로 실제 항만시설 면적은 108,455㎡이지만 공사시 해저면 환경변화를 고려한 면적임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단장 : ○○○
 - 육상조사 책임조사원 : ○○○
 - 수중조사 책임조사원 : ○○○
- 조사면적 : 1,405,030㎡(육상 973,702㎡, 수중 431,328㎡)
- 조사기간 : 2015. 3. 26.~2015. 7. 31.

○ 조사결과

- 발전소 등 시설물 사업부지 내에서 유적과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 다만 터널부지 내에 ‘삼척 삼맹방리 유적추정지’ 에 대해서 표본조사(3,562㎡) 실시
- 수중조사 결과는 장비탐사 및 잠수조사를 실시, 7개 이상체(폐그물, 인공어초) 확인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시대	조사기관 의견	비고	
1	삼척 삼맹방리 유적 추정지	삼척 근덕면 삼맹방리 486 일원	3,562	신석기~삼국	표본조사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3,562㎡(표본 3,562㎡)					

라. 학술자문회의(2015. 4. 2. / ○○○, ○○○)

- 적노동 일원에서 확인된 무연고묘 2기는 장사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대로 처리
- 삼맹방리 486번지 일원으로 해안사구 지대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본조사가 필요함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3.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계획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계획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계획 수립용역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읍내동 일원
- 시행자 : 대전광역시
- 사업면적 : 2,318,032m²
- 사업내용 :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분	합계	산업 시설용지	복합 시설용지	일반주택 용지	지원 시설용지	상업 시설용지	녹지	도로, 주차장 등
면적(m ²)	2,318,032	1,634,719	58,959	32,030	92,091	10,186	143,602	346,445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조사면적 : 2,318,032m²
- 조사기간 : 2013. 7. 24. ~ 2015. 9. 18.
- 조사결과
 - 조사지역은 남서쪽 구릉지대의 유물산포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현재 대전 제1·2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유구·유물 확인이 어려움

- 조사결과, 하천변의 충적지대는 자연제방 혹은 배후습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어 원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하천에 인접한 구릉지대는 공장이 들어서지는 과정에서 구 지형이 절토되었지만 과거 대지조성 시 복토된 사면 하단부는 원지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입회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사지역 남서쪽에 위치한 시루봉 일대는 유존지역이거나 신규로 대화동 유물산포지2가 확인됨에 따라 시굴조사가 필요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m ²)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대화동 유물산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오정동 일대	110,163	청동기~조선	시굴조사		
2	대화동 고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산36-2	6,220	삼국	시굴조사		
3	대화동 유물산포지2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산45 일대	28,797	고려~조선	시굴조사		
4	구만이마을 유적추정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0,963	미상	표본조사		
5	대화동 유적추정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707,889	미상	입회조사		
	합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2,224,032m ² (시굴 145,180m ² / 표본 370,963m ² , 입회 1,707,889m ²)					

라. 학술자문회의(2015. 9. 16. / ○○○, ○○○)

- 이 지역 주변은 대전천·갑천의 합수지역으로 청동기시대~삼국시대의 유적들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어, 조사지역에도 원래는 유적 분포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 공장지대에 대해서는 현상변경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입회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릉에서는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광범하게 흩어져 있음에 따라 조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보존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 대로 하되, 표본조사 지역은 시굴조사로 전환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4. 나주 진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진천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진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103-8번지 일원
-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면적 : 1,348,300m²
- 사업내용 : 경지정리

구분	합계	정지정리	용수로	배수로	도로	복토원
면적(m ²)	1,348,300	1,290,000	6,900	20,400	6,000	25,000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조사면적 : 1,348,300m²
- 조사기간 : 2015. 8. 3. ~ 2015. 9. 11.
- 조사결과
 - 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은 장동리 수량골 유물산포지, 수문 유물산포지, 화성리 화산 유물산포지, 장동리 수문패총 등 4개소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시굴조사 필요

- 특히, 수문패총은 '08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일부 발굴조사가 실시된 유적으로 조사 완료지역은 제외하도록 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장동리 수량골 유물산포지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13,385	구석기~삼국	시굴조사	
2	장동리 수문 유물산포지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7,578	구석기~삼국	시굴조사	
3	장동리 수문 패총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13,578	원삼국~삼국	시굴조사	
4	화성리 화산 유물산포지	나주시 공산면 화성리	3,406	구석기~삼국	시굴조사	
	합 계		37,947㎡			

라. 학술자문회의(2015. 9. 11. / ○○○, ○○○)

- 지표조사 결과 유적으로 확인된 장동리 수량골 유물산포지, 수문 유물산포지, 화성리 화산 유물산포지, 장동리 수문패총 등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공사 시행 여부 검토
- 수문패총은 '08년에 발굴조사를 실시한 수문패총 지역은 제외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 대로 하되, 사업구역 내 수로 변경·확장 구간에 대해 입회조사 실시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5. 해남 영춘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영춘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해남 영춘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27-8번지 일원
-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면적 : 1,305,212m²
- 사업내용 : 경지정리

구분	합계	정지정리	용수로	배수로	복토원
면적(m ²)	1,305,212	1,232,000	14,190	27,400	25,000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조사면적 : 1,305,212m²
- 조사기간 : 2015. 8. 20. ~ 2015. 9. 18.
- 조사결과
 - 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향촌 유물산포지, 송산 지석묘군, 대산리 장성 유물산포지, 청신리 청신 유물산포지는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송산리 화촌 유물산포지2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또한, 사업예정구간의 배수로, 용수로가 지나가는 향촌 유물산포지 등은 입회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m ²)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번촌리 향촌 유물산포지	해남군 옥천면 번촌리	232,370	삼국	시굴조사	
2	송산리 송산 지석묘군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1,920	청동기	시굴조사	
3	대산리 장성 유물산포지	해남군 옥천면 대산리	15,000	삼국	시굴조사	
4	청신리 청신 유물산포지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10,000	삼국	시굴조사	
5	송산리 화촌 유물산포지2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381,000	삼국	표본조사	
6	번촌리 향촌 유물산포지	해남군 옥천면 향촌리	10,630	삼국	입회조사	
7	송산리 화촌 유물산포지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15,000	삼국	입회조사	
	합 계		665,920m ²	(시굴 259,290, 표본 381,000, 입회 25,630)		

라. 학술자문회의(2015. 9. 14. / ○○○, ○○○)

- 지표조사 결과 유적으로 확인된 향촌 유물산포지 등 4개소는 시굴조사를, 화촌 유물산포지2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단, 용수로, 배수로 부분은 입회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후 조치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6. 춘천 중도 도시계획도로부지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엘엘개발(주)에서 추진하는 「춘천 중도 도시계획도로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춘천 중도 도시계획도로부지」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유구의 보존 방안 수립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엘엘개발(주)
- (2) 발굴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357-32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20,575㎡(정밀발굴)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5) 발굴기관 : (재)강원문화재연구소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참고사항

- 춘천 중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목적
 - 근화동-중도-신매리를 연결하는 춘천 도시계획도로와 하중도 외곽 순환도로를 연계·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교통편의 제공

마. 의결사항

- 부결
 - 보존 구역에 대한 도로개설 신중 검토
- 부결 7명 / 출석 7명

7. 남한산성 남장대 발굴

가. 제안사항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남한산성」(사적 제57호) 남장대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한산성 남장대」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 유적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여 향후 복원과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기문화재단
- (2) 발굴 대상지역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32-1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420㎡(발굴)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34일
- (5) 발굴기관 : (재)경기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참고사항

- 동 건물은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8.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광주시에 추진하는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도 기념물 제188호) 발굴(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에 대해 발굴(시굴)조사를 실시, 유적의 분포범위 등을 파악하여 향후 조사·연구 및 활용 방안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광주시장
- (2) 발굴 대상지역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1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147,103㎡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
- (5) 발굴기관 : (재)경기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 장 : ○ ○ ○
 - 책임조사원 : ○ ○ ○

라. 참고사항

- 동 건물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발굴조사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재검토
- 부결 7명 / 출석 7명

9. 부여 화자산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부여군이 추진하는 「화자산 유적」(사적 제425호)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화자산유적」 사적지정 구역(서편 일원)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 유적의 분포 범위 등 학술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보존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여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5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1,600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 (5) 발굴기관 : (재)백제고도문화재단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참고사항

- 동 건물은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사업임
- 2000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착수 시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
- 조건부가결 7명 / 출석 7명

10. 보령 충청수영성 성벽(동벽) 발굴

가. 제안사항

보령시가 추진하는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령 충청수영성」 사적지정 구역(동성벽)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 유적의 분포 범위 등 학술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보존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보령시장
-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3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120㎡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일
- (5) 발굴기관 : (재)백제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참고사항

- 동 건물은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임
- 2015년도에 가경고고학연구소에서 내아영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에서 동문지 및 성벽 일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수립 후, 그에 따라 순차적 발굴조사 실시
- 부결 7명 / 출석 7명

11. 부안 우금산성 발굴

가. 제안사항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우금산성」(도 기념물 제20호)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안 우금산성」 남문지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 유적의 분포 범위 등 학술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보존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안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99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250㎡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
- (5) 발굴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참고사항

- 동 건물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허가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2. 부안 유천리요지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유천리요지」(사적 제69호) 발굴(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안 유천리요지」 내 가마 확인을 위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 유적의 분포 범위 등 학술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보존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안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290-11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10,167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 (5) 발굴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 장 : ○ ○ ○
 - 책임조사원 : ○ ○ ○

라. 참고사항

- 동 건물은 2015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조사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재검토
- 부결 7명 / 출석 7명

13. 거창 거열성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거열성」(도 기념물 제22호) 발굴(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도 기념물 제22호 『거창 거열성』에 대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명확한 성격과 역사성, 축조 시기, 축조 주체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건물 사적 지정을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시 추가 발굴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거창군수
 - (2) 발굴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 45-2 일원
 - (3) 발굴면적 : 78,524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44일
 - (5) 발굴기관 :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참고사항

- 동 건물은 경남도의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임
- 그간의 발굴조사 현황
 - 조사기관 : 우리문화재연구원
 - 조사현황 : 시굴조사('04~'05년), 발굴조사(2008. 11. 26.~2009. 2. 4.)
 - 조사결과 : 체성, 집수시설, 내부 석축 확인조사
 - 출토유물로 볼 때, 서기 6~7세기 중엽 축성시기 판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초기 단계에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
- 조건부가결 7명 / 출석 7명

14. 거창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에 대한 표본조사(경남발전연구원) 결과 확인된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생활유적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건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거창군)에서 기초·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재)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발굴하는 사항으로,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적격성(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심의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거창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3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5,485㎡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 (5) 발굴기관 :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추진경과

- 표본조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기간 : 2014. 2. 24.~2014. 4. 24.
 - 결과 : 신석기~청동기, 삼국시대 주거지, 수혈 등의 생활유적 및 경작유구 등 확인/ 83,427㎡(I 지구 : 75,490, II 지구 : 7,937) 정밀 발굴조사 필요
- 금번 발굴조사계획(조사단 의견)
 - 동 사업대상지 중 I 지구의 유구 및 문화층 분포범위(75,490㎡) 중 벼농사 지역은 부지정리 작업 없이 논 형상 그대로 창포 등을 식재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수로(5,485㎡) 조성부지에 대해서만 발굴조사 실시

- 세부 공사계획도를 확인한 결과 생태수로에 접해 의자, 종합안내판, 돌무더기, 국화원 등이 배치될 예정이며, 시설물 설치 중에 형질이 변경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실시 필요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14. 11. 6. / ○○○, ○○○)**

- 신석기, 청동기~삼국시대 주거지, 수혈, 지식묘, 경작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 유적으로 토기편, 석부 등이 확인됨
- 현 지형을 굴착하여 형질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적의 분포와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가 필요함

마. 사업시행자 의견(거창군) : 상피제도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하”목 및 제8호“다”목에 의거 적법한 절차(수의계약)에 따라 조사기관 선정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시굴조사 완료 후에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바. 검토의견 : 발굴조사 상피제도 관련 지침 참고

-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발굴제도과-8761 / '15. 7. 27. 시행)
 -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판단(검토)기준
(다음 ① ~ ③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성 침해로 판단)

구 분	판단(검토) 기준	비 고
① 발굴조사계획의 적절성	· 조사계획서 구성 및 내용의 구체성, 객관성 · 조사기간의 적절성 / 조사방법의 타당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조사계획의 적합성 검토
② 이전의 공정성 침해 유사 사례	· 동일 사업시행자 발주의 발굴조사와 관련 과거에 부실조사로 문책 받았거나 부실 조사로 인정된 사례	부실 사례
③ <u>발굴조사 참여방식</u>	· 수의계약에 의해 조사기관이 선정된 경우 · 사업규모/사업내용상 출자 조사기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조사 참여 방식

- 본 건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조사기관을 선정된 것에 해당됨

사. 의결사항

- 부결
 - 상피제 적용
- 부결 7명 / 출석 7명

15. 경주 월성 발굴

가. 제안사항

경주시가 추진하는 「월성」(사적 제16호) 발굴 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월성 해자 복원사업 추진 및 내부 조사지역 확대 등을 위해 경주시에서 추가 조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기존 허가사항의 변경사유 발생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
- (2) 발굴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387-1번지 외 150필지
- (3) 발굴 대상면적 : 222,528㎡(해자 구간면적 15,000㎡ 포함)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460일(해자 조사기간 230일 포함)
- (5) 발굴기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조사단장 : ○ ○ ○
 - 책임조사원 : ○ ○ ○, ○ ○ ○, ○ ○ ○

라. 검토의견

- 1~3호 해자의 내부 퇴적토 조사 등 추가 보완조사 실시
- 기존 허가지역 내 미조사지구(A·B) 시굴조사 및 동문지(D지구) 발굴조사 실시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보류 7명 / 출석 7명

16.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5회(2015. 5월~9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평가회의(2015. 5. 29.),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심의(2015. 9. 18.)에 따른 현지조사(2015. 10. 13.)를 거쳐,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주)서울대메디컬허브
- (2) 발굴장소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 발굴 1,310m²
- (3) 발굴기관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4) 발굴기간 : 2015. 4. 13.~2015. 9. 8(실조사일수 35일)
- (5) 조사결과
 - 대한의원 부속병동(동·서1병동)의 조적조 및 콘크리트 기초 확인

라. 추진경과

- (1) 전문가 검토회의(2015. 5. 29. / ○○○, ○○○, ○○○, ○○○)
 - 대한제국 시기 근대병원 설립을 입증하는 유적으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박증거임
 - 20세기 초 서양식 건축기법과 재료를 원형 그대로 확인할 수 있음
 - 서1병동 건물터와 동1병동 건물터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가 요망됨
- (2) 전문가 검토회의(2015. 7. 1. / ○○○, ○○○, ○○○, ○○○)
 - 근대의 국가주도의 근대식 병원과 의학체계의 도입을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 발굴유적(서1병동)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동1병동 지역의 경우 시굴조사 결과 검토 후 정밀발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전문가 검토회의(2015. 7. 16. / ○○○, ○○○, ○○○)

- 2011년 시행한 동1병동부지의 시굴조사에 대한 검토결과, 다수의 근대유구가 확인되므로 동1병동부지(770m²)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함
- 발굴결과 확인된 서1병동 하부 기초부분이 열악한 상태이며, 특징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음
- 발굴유구에서 건축기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과거의 흔적을 살려서 새로운 건축·조경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4) 전문가 검토회의(2015. 9. 3. / ○○○, ○○○, ○○○, ○○○)

- 동1병동 터는 첨단외래센터 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서1병동 유구의 보존을 검토하되, 첨단외래센터의 코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와 레벨을 고려하기 바람
- 동1병동 유구 중 건축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서1병동 유구 보존과 관련한 야외 전시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대한의원의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한의원 본관과 부속병동을 연결하는 복도 및 약제실 등에 대한 발굴과 정비·복원을 검토하기 바람

(5) 전문가 검토회의(2015. 9. 9. / ○○○, ○○○, ○○○, ○○○)

-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결과 확인된 대한의원 부속병동(동·서1병동) 터는 근대 의료 역사와 건축사를 증거하는 중요한 역사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 건축 행위(첨단외래센터 건립)로 인해 유구 보존이 어려운 동1병동 터는 잔존상태가 양호한 일부 유구에 대해 이전보존을 고려하고, 서1병동 터는 건축물의 코아에 걸리지 않는 유구는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 발굴유적 보존과 관련해서는 단순 유구의 보존을 넘어 야외 역사 소공원으로의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 대한의원의 약제실과 부속병동 연결 복도, 서측 날개 건물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발굴, 정비·복원 등) 수립도 검토하기 바람

(6)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5. 29. / ○○○, ○○○, ○○○, ○○○)

- 평가 평점 : 86.44
- 1907년 대한제국 시기의 병원 건물 유구로서 보존가치가 아주 높음

(7)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제10차 / 2015. 9. 18.)

- 심의 결과: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8) 현지조사(2015. 10. 13. / ○○○, ○○○, ○○○)

- 발굴유적의 노출·전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당대 최고의 병원임을 잘 표현하기 바람

마. 사업시행자 의견

- 서1병동 및 동1병동 터의 건물기초 윤곽을 바닥 패턴으로 표현하고, 그 중 병동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부분(15×9m)에 대해서는 노출하여 전시함

바. 검토의견

- 대한의원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학계 및 여론에 이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보존여부 또는 보존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적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전문가 검토
- 조건부가결 7명 / 출석 7명

17. 평택 용죽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평택 용죽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평택 용죽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구간에 대하여 1차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10. 8.)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10. 8.)하고,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조합
- (2) 발굴장소 및 면적 : 경기 평택 용이동 301-2번지 일원(2지점 추가조사구역) / 발굴 8,499m²
- (3) 발굴기관 :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4) 발굴기간 : 2015. 6. 23.~2016. 5. 31.(실조사일수 190일)
- (5)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조선시대 주거지 87기, 환호 3기, 분묘 등 448기 유구 확인
 -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은 환호 내부에 형성되어 있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층단을 이루며 주거지 배치가 되어 있고 상부에는 제의관련 유구로 추정되는 시설 확인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10. 8. / ○○○, ○○○, ○○○)

- 상부 환호시설은 제의관련 유구로 추정되며 보존가치가 높음
- 하부 환호 유구는 청동기 시대 환호로는 드물게 잔존상태가 좋아 보존 필요
- 계획된 공사 라인에서 추정 제의시설 및 1호 주거지, 환호 유구를 보존하는 공사 계획 변경 필요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보류 7명 / 출석 7명

18.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부지 내 수양개 VI지구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부지 내 수양개 VI지구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북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부지 내 수양개 VI지구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8. 24.)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8. 24.)하고,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
- (2) 발굴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일원
- (3) 발굴면적 : 시굴(2,773㎡), 발굴(1,708㎡)
- (4) 발굴기관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 조 사 단 장 : ○ ○ ○
 - 책임조사원 : ○ ○ ○
- (5) 발굴기간 : 2013. 4. 10.~2015. 7. 29.
- (6) 조사결과
 - 수양개유적 VI지구 후기 구석기시대 4개층의 문화층에서 40,000여 점의 구석기유물 출토
 - 2문화층에서는 활석 자갈돌 안쪽면을 갈아서 만든 돌그릇 출토
 - 3문화층에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길이 0.3~0.5cm의 짧은 줄을 0.3~0.35cm의 간격으로 23줄 새긴 자갈돌 1점(20.6×8.1×4.2cm) 출토
 - 4문화층에서는 우리나라 후기 구석기시대 이른 시기(약 40,000년 전)에 해당되는 문화층에서 출토된 것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의 길이 20cm 정도 크기의 대형 돌날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스페찌르개가 40여 점 출토
 - 우리나라 후기 구석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늦은 시기까지 석기제작기술의 전개과정 파악과 석기제작기술을 복원, 예술·문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8. 24. / ○○○, ○○○, ○○○)

- 수양개 VI지구의 발굴성과는 현생인류의 기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제시해주었다. 4만년이 넘는 돌날석기 문화가 4개 문화층에 걸쳐 확인되고 있음
- 현재까지 확인된 4개 문화층 뿐 아니라, 그 아래의 문화층 존재와 제4문화층의 분포범위(산 쪽으로의 평면 분포 포함)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더 진행하여 문화사적 기원을 파악하여야 함
- 이 유적의 세계사적 의미를 볼 때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유적의 문화층이 정연하게 잘 남아있어 문화층별 잔존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스페썬끼, 눈금석기, 석재그릇 류 등 다양하고 중요한 석기들이 출토되어 학술적 가치가 큼, 따라서 유적의 현지보존 요망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8. 24. / ○○○, ○○○, ○○○)

- 평가 평점 : 96.40점

바. 사업시행자 의견(한국수자원공사)

- 수중보 월류수위 내 유적이 포함되어 있어 우기 시 빠른 유속으로 인한 파도와 물살로 유적지 훼손방지 수립
- 수중보 건설 전·후 유속 등 검토 결과, 호안공법이 유적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 VI지구의 의 지형여건과 수리검토(유속, 소류력) 결과가 수중보 상류 4.6km 지점에 위치한 I·II지구와 유사하므로, 호안공법의 안정성, 경제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I·II지구의 보존방안으로 적용된 매트리스 돌망태 공법 적용 보존

사. 의결사항

- 보류
 - 보존방안 보완 후 재검토
- 보류 7명 / 출석 7명

19. 대구 국가산단(1-2공구) 과학대로 확장에 따른 보존유적 재이전 심의

가. 제안사항

대구 국가산업단지(1-2공구) 과학대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존유적(이전보존) 재이전 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국가산업단지(1-2공구) 과학대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존유적 재이전 방안에 대하여 현지조사(2015. 9. 25.)를 거쳐, 재이전 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보존유적 재이전 개요

- (1) 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2) 유적명 : 대구광역시 달성 평촌리 유적(청동기시대 석관묘 3기)
- (3) 보존유형 : 이전보존(2008년)
- (4) 보존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20번지
- (5) 재이전 사유 :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존유적 보존 검토
- (6) 재이전 장소 : 인근 근린공원 내

라. 현지조사(2015. 9. 25. / ○○○, ○○○)

- 현재 이전보존 3기의 석관묘는 쪼개짐 등 훼손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임
- 대구 국가산단 내 도로 확장에 따라 당해 보존유적을 다시 이전할 경우, 인근에 조성되는 공원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전방법은 석관묘의 보존상태가 불량(쪼개짐 등 훼손 심함)하므로, 공원부지 내에 매납하여 보존하고, 유적의 발굴 및 이전에 관한 경과 사항을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를 고려하기 바람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20. 아산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표본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

가. 부의사항

「아산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표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재)백제 고도문화재단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의사유

- 동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표본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부실 여부 판단
 - (재)백제고도문화재단이 동 사업부지에 대해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서 (재)가경고고학연구소가 보완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지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됨
 - 표본조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표본조사 부실 여부 검토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에 의거한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기준’ 검토
- 동 건물은 제10차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회의 시(‘15.9.18)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사안임

다. 사업개요

- (1) 사업명 : 아산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월천리, 북수리 일원
- (3) 사업면적 : 451,788㎡
- (4) 사업기간 : 2008~2025년
- (5) 시행자 : 아산시장

라. 조사개요

- (1) 조사면적 : 399,504㎡(시굴 112,776㎡, 표본 286,728㎡)
 - 시굴조사 : (재)가경고고학연구소(2014. 12. 23.~)
 - 표본조사 : (재)백제고도문화재단(2014. 12. 29.~2015. 2. 17. / 현장조사 18일)
- (2) 조사결과
 - 시굴조사 : 원삼국시대 주거지, 토광묘, 경작층, 수혈유구 등 유구와 유물 확인
 - 표본조사 : 조사구역 I-③, I-④구역은 유적과 관련된 유구·유물 없음

마. 처리경과

- 2009. 4. 28.~2009. 5. 27. 문화재 지표조사((재)백제문화재연구원)
 - 조사결과
 - 유물산포지 5개소에 대해서는 시굴조사 실시, 지표상에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천변 일대의 안정적 충적지는 인근의 ‘아산 갈매리 유적’ 등 감안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4개소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실시 의견 제시
- 2009. 7. 20. 문화재청,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 2014. 12. 29.~2015. 2. 17. 문화재 표본조사(현장조사일수 18일)
 - 조사기관 : (재)백제고도문화재단
 - 조사결과
 - I-③, I-④구역은 유적과 관련한 유구·유물 없음
 - II-②구역은 선사~근대에 이르는 생활 및 분묘 유적 확인, 민묘 이장 이후 동사면 일대에 대한 추가적인 시굴조사 실시 의견 제시
 - 학술자문회의(2015. 2. 4. / ○○○, ○○○)
 - II-②구역은 선사~근대에 이르는 생활 및 분묘 유적 판단
 - I-③, I-④구역은 유구·유물 확인되지 않음
- 2015. 2. 2.~2015. 2. 12. 문화재 시굴조사
 - 조사기관 : (재)가령고고학연구소
 - 조사결과
 - 1지점은 인근의 갈매리 유적과 유사한 원삼국~백제시대 경작유구와 수혈 등이 확인됨. 3·4지점은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5·6지점은 백제~조선시대의 토광묘 등 유구가 확인됨
 - 학술자문회의(2015. 2. 10. / ○○○, ○○○, ○○○)
 - 1지점과 5지점은 발굴조사 필요. 6지점은 수습조사 후 3·4지점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어도 무방함. 2지점과 1지점 일부는 지장물 철거 후 조사 실시
 - 1지점과 같은 지형인 표본조사 지점(백제고도문화재단)에는 유구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굴조사를 재검토하여 기반층위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2015. 3. 19. 문화재청, 표본조사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 시굴조사 지역(가령고고학연구소)과 표본조사 지역(백제고도문화재단)의 조사결과가 상이함에 따라 연결된 지점에 대해 트렌치를 관통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매장문화재 유존여부 판단
 - 양 기관의 상이한 조사결과는 표고 차이 및 토층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여겨짐
- 2015. 4. 2. 문화재청, 1차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바’항 참조)
 - 시굴조사 지역의 문화층과 연결되는 유구 잔존 가능 지역에 대한 추가 시굴 실시
 - 유구 잔존 가능부지는 시굴조사 완료 후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발굴 전환 검토

- 2015. 4. 13. 문화재청, 시굴조사 1차 부분완료(가경고고학연구소)
 -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완료된 3, 4, 6지점에 대한 부분완료 조치(22,330m²)
- 2015. 6. 2. 문화재청, 시굴조사 변경허가(가경고고학연구소)
 - 백제고도문화재단이 실시한 표본조사 지역 중 유존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전환(23,950m²)
- 2015. 6. 24. 문화재청, 2차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바'항 참조)
 - 유구 경계를 찾기 위한 트렌치 조사를 연장하여 실시 조치
- 2015. 9. 4. 문화재청, 3차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바'항 참조)
 -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회의 추가 실시
- 2015. 9. 11. 문화재청, 4차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바'항 참조)
 - 시굴 전환지점에서 유구가 확인된 지역(5지점, I-③구역)은 발굴조사로 전환 조치

바. 전문가 검토의견

- 1차(2015. 4. 2. / ○○○, ○○○)
 - 표본조사 지역 Tr.2, 3, 5, 8을 연결하는 선 이북지점(12,620m²)은 시굴조사 대상지역의 문화층과 연결되어 유구의 잔존 가능성이 있음
- 2차(2015. 6. 24. / ○○○, ○○○)
 - 추가 시굴 경계지점에서 원삼국시대 유구들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유적의 동쪽과 남쪽으로 유구 확인을 위한 트렌치 연장조사 필요
- 3차(2015. 9. 4. / ○○○, ○○○)
 - 기 표본조사 지점에서 시굴트렌치 조사를 확대한 결과, 전 지점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조사지역 전체를 유적범위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정확한 범위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선행 표본조사와 관련,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검토과정에 비추어 고의성을 지적하기 어려움
- 4차(2015. 9. 11. / ○○○, ○○○, ○○○)
 - 5지점과 보완 시굴조사 구역(I-③구역)은 발굴조사로 전환할 것
 - (재)백제고도문화재단의 표본조사 방법에서의 고의적 부실조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사. 표본조사기관 의견((재)백제고도문화재단)

- 1차 조사결과 번복 사유
 - 당초 조사가 진행된 시점은 1월 중으로 대상지 일대 표토층이 대부분 동결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굴착하는 과정에서 경작층 하부의 문화층이 불가피하게 파다 제토됨에 따라 문화층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 사전 조사를 통해 인근의 ‘아산 갈매리 유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적의 잔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으나 굴착과정에서 유물 및 유적의 잔존 징후를 확인하지 못하고 원 지반까지 제토함
- 저습지에 해당하는 자연지형상 굴착을 하자마자 지하수가 분출되는 상황임. 조사기간이 짧고 면적이 넓은 표본조사의 한계로 인해 각각의 트렌치마다 양수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배수를 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이었음
- 조사 결과, 근현대의 자연제방과 배후습지 지형을 고대에 투사하여 I-③구역 일대가 오목한 곡부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이 일대가 배후습지로 근세 이전의 유적 및 문화층이 잔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함
- 2차 조사결과 번복 사유
 - 근세 경작층과 조사대상지 서쪽 가장자리를 제외하고는 유구 및 유물을 발견하지 못함
 - 서쪽 가장자리에서 원삼국시대 생활면과 기반층이 잔존하였으나 동쪽으로 가면서 후대의 모래퇴적층 형성에 따라 사라지는 양상을 확인함
- 3차 조사결과 번복 사유
 - 조사 초기에는 삽교천을 비롯한 소하천과 그 주변의 자연제방 사이의 배후습지로 판단함. 그러나 가경고고학연구소의 추가조사 결과 고대에는 불룩한 지형에 해당함을 재인식하게 됨
 - 본 기관이 지형 분석의 실수로 인해 이 일대의 층위 및 형성과정의 해석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조사기관의 의견을 번복하여 이 일대 70,860㎡에 대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
 - 추가조사 범위는 가경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추가 시굴조사 결과와 고지형 재해석에 따른 자연지형을 근거로 함

아. 검토의견

- (재)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아산시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한 표본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구역 중 I-③, I-④구역은 유적과 관련한 유구·유물 없는 것으로 보고됨.
- 그런데, (재)가경고고학연구소에서 경계지역 추가 시굴조사결과 동 지역에서 원삼국시대 유구(문화층)가 확인됨에 따라 (재)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당초의 표본조사결과를 번복하여 동 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70,860㎡) 의견 제출
- 위 사항과 관련, 본 위원회에서 검토할 (재)백제고도문화재단의 책임문제
 - ① 해당 지역(I-③)에 대한 표본조사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
 - ⇒ 전문가들은 고의적 부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 ② 동일 지역 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
 - ⇒ 조사기관은 경작층 하부의 문화층이 불가피하게 과다 제토되어 확인 못했다고 답변
 - ③ 당초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지역이 정밀발굴로 전환하게 된 책임문제
 - ⇒ 표본조사 보고의 허위문제, 과다 제토로 인해 문화층을 확인 못한 부실조사 문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개별기준 1호(부실조사) : 업무정지 1년(정상참작 시 6개월)
 - 개별기준 2호(보고서 부실작성) : 경고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동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1항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II.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1차 위반: 1년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년 ·3차 이상 위반: 2년

자.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부실조사는 인정되나,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음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II. 보고사항

1.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시스템 구축 관련 보고

가. 보고사항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보다 명확한 보존조치를 위하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관련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신속한 보존조치 확보
-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명확한 보존조치를 위한 지표조사 결과 검토시스템 구축

다. 현황 및 문제점

- 100만㎡ 미만('13년-1271건, '14년-1394건) 개발사업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보존조치는 담당자가 지표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통보
 - 장점 : 서면검토 거쳐 신속한 처분
 - 단점 : 지표조사에 대한 충실한 검토 미흡
- 100만㎡ 이상('13년-42건, '14년-45건) 개발사업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보존조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
 - 장점 : 지표조사 내용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
 - 단점 : 월 1회 실시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민원처리에 장기간 소요
- 지표조사 내용에 대한 충실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조사방법(시굴·발굴 등) 및 범위 설정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 운영 필요

라. 개선방안

-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
 - 시기 : 주 1회
 - 지역별, 전공별 전문가(인력풀)에 의한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
 - 검토 내용 :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및 조사방법(시굴·발굴 등), 조사범위 설정
- 중요 사안(부실조사 등)은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등을 거쳐 처분
- 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및 반영(지표조사 결과와 시굴·발굴조사 결과 검증은 기반으로)

마. 향후 계획(추진 일정)

- '15. 11. ~ '16. 2. : 시범실시, 운영점검 및 보완
- '16. 3. : 본격시행

바. 관련 법령 개정('16. 3.)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개정

현 행	개 정(안)
<p>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p> <p>① 생략</p> <p>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p> <p>1., 2 생략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고도지역></p> <p>3. <u>사업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u> <신 설></p> <p>③ <u>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p> <p>① <u>현행과 같음</u></p> <p>② <u>현행과 같음</u></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삭제</u></p> <p>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외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관련전문가 2명 이상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u>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⑤ <u>현행④항과 같음</u></p>

사.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원안접수 7명 / 출석 7명